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신설〉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13호)

2026. 7.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신설(안 별표 제97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호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3. 19.

다. 회 부 일 : 2026.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신설(안 별표)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신설>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부담금은 현행법 제3조1)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담금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부담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관련: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3조(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1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대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 달성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지원

2.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3. 에너지 복지 지원

4. 제11조제8항에 따른 발전지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 중 10분의 4 이상을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이하 “특별자치시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 등은 이를 제5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이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이용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 이익의 국민적 공유,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료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이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입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안) 개요]

- (목적) 재생에너지 이용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 이익의 국민적 공유, 화석연료 발전 산업 종료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이행 자원 확보
- (부과·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부과대상)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귀속)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입으로 편입
- (부과금액)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감면요건)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 달성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전기사업법」 중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0의2. 삭제 <2020. 3. 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재생에너지’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여 개발·소유·운영하는 재생에너지를 의미하며,²⁾ 이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넘어 기

2)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공공재생에너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립한 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에서 개발·소유·운영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공공협력과 주민주도성 및 이익공유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 수행과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자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하도록 하는 공적 가치를 지님.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발전시장 재편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중심으로 해외 자본의 유입이 확대되고 민간 주도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재인 햇빛과 바람 등 자연자원의 이용 이익이 특정 자본에 편중되고 에너지 공급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하여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이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을 최소화하고 이들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흡수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적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행 예산 체계와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공공 주도의 발전 생태계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임.³⁾

또한, 재생에너지 자원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대규모 발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임.

따라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공적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화석연료 발전 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환류시키려는 방안으로서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이행을 도모하고 국가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만, 동 부담금의 신설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정책목표⁴⁾와 배치되어 관련 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 시 발전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부담금은 국민에게 납세의무 외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3) 참고로, 2025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92번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에서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협력사 고용 안정 방안 마련, 전환산업 사회적 대화 지원 등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4)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39번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햇빛·바람연금 확대, RE100산단 구축 등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부담금을 도입하려는 경우 도입 여부가 타당한지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⁶⁾에서는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부담금의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①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②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③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④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 여부, ⑤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 ⑥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부담금 필요성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5)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건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첫째,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은 태양에너지·풍력 등 공공 자산인 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다시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서 신설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임.

특히, 특정 사업자가 공공 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 등 외부 불경제를 내부화하려는 정책적 지향점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및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둘째,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⁷⁾, 개정안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납부 의무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부과요율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10분의 2(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음.

다만,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의 경우, 발전사업자의 전체 이익 중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만을 어떻게 분리하여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이며, 발전 사업의 규모나 종류, 수익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일괄

7)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향후 시행령 마련 시, 사업 유형별 순이익 산정 모델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납부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나 초기 투자 비용 회수가 필요한 신규 사업자 등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 요율을 적용하는 등 부과 대상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그에 따른 노동자 전직 지원 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재원 조성 필요성이 인정되며, 징수된 재원의 40% 이상을 발전시설 소재지 지자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나머지를 공공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및 에너지 복지 등 제정안 제13조제5항에서 정한 용도로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 목적의 공정성과 재원 환류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와 부담금 부과라는 규제 수단 간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급 목표 달성 시까지는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과는 부과 대상(사용자 vs 발전사업자)과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중복은 없는 것으로 보임.

[부담금 간 비교]

부담금명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담금법 별표 제69호)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안)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제51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제13조
부과목적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실시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 전기안전확보, 보편적 전력공급 등	재생에너지 이용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 이익의 국민적 공유,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료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이행
부과대상	전기사용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산정기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 (현재 시행령상 2.7%)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20% 범위 내

다섯째,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⁸⁾ 동 부담금의 경우 공공 자원인 자연 자원을 특정 사업자가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계된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세보다는 부담금의 부과가 적절한 것으로 보임.

8)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에너지 전환 및 노동자 지원 사업에 환류시켜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으로 편입되는 조세보다는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부담금 방식이 정책적 실효성 및 원칙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여섯째,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⁹⁾, 화석연료 발전의 종료와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은 장기적인 국가 전략 과제이므로 단기적인 존속기한 설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주기적인 운영 평가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 목표 달성률 및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여 부담금의 유지 여부와 효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으로 ① 부담금 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집단일 것(집단적 동질성), ②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객관적 근접성), ③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집단적 책임성), ④ 부담금

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집단적 효용성)¹⁰⁾을 제시하고 있음¹¹⁾.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볼 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태양에너지, 풍력 등 공공의 자산인 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으로서, 일반 국민이나 일반적인 제조업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경제적·기능적 특수성을 가지므로 집단적 동질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부담금의 목적인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석연료 발전 산업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객관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화석연료 발전의 감축을 전제로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고용 위기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팽창과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임.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공공 자원을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기존 에너지 생태계의 재편을 가속화하게 되며,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 위축, 노동자 실직 등 산업 대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결과물이기도 하므로, 해당 이익의 일부를 전환 비용으로 분담시키는 것은 집단적 책임

10)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므로, 과제의 수행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과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 여부 등은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11)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결정,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등

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조성된 재원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의 인프라 확충, 계통 연계 보강,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해소(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납부자 집단의 장기적 이익으로 환류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효용성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납부 의무자와 수혜자 간의 관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수된 재원이 단순히 '에너지 복지 지원'이라는 포괄적 용도에 그치지 않고 납부자들의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는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과제 등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고, 발전사업자의 규모나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 부과하는 것은 부과 요건의 구체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며, 발전 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 가중 우려가 있고, 타 발전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담금 부과대상(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과 사용대상(국민) 간 관련성이 부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정책적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로 사업 수익성을 저하시켜 투자 위축, 보급 속도 저하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본 개정안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신 설></u>	별표 97. 「 <u>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u> 」 제13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u>

문의처
02)6788-5153